

정 관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은『Korea Forest Healing Instructor Association』으로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구성원의 산림치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협회는 산림치유지도사의 연수 교육과 인성 교육을 실시하여 그 역량을 강화하며 산림치유지도사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친목 도모 및 전국 산림치유지도사의 처우 개선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본 협회는 산림치유지도사와 유관 관계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산림치유지도사의 영역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림치유 제도 대국민 홍보 활동
2.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림치유 활동
3.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산림치유지도사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보수교육
5.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료, 서적,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

6. 산림치유와 관련된 제반 연구와 조사, 정책 개발 제안을 위한 활동
7. 기타 협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 1 절 회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림치유지도사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산림치유지도사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1. 산림치유지도사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기타 산림치유와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

③ 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 협회의 관련사업에 전문성이나 상당한 경험을 인정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제 6 조(협회의 가입, 탈회, 자격정지, 자격상실, 구제 등)

① 본 협회에 가입하려는 자는 제 5조에 의거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② 본 협회의 회원은 이사회에 탈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③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이 상실된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2.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해 사업수행을 방해한 때
3. 각종 회비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④ 탈회 및 제명,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가 재가입을 허가하거나 정지된 자격을 1회에 한하여 구제할 수 있다.

1. 탈회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경우
2.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 7 조(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협회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이용할 권리
3.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총회에서 발언권

제 8 조(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입회비와 회비의 납부 의무
3. 기타 산림치유지도자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제 9 조(회원의 회비 반환) 본 협회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탈회, 제명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 2 절 임 원

제 10 조(임원의 구성) 협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 회장은 1인으로 한다.
2. 협회 부회장은 3~5인으로 한다.
3. 지회장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별 각 1인을 둘 수 있다.

4. 감사 2인
5. 이사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직능별대표,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한 35인 이내로 한다.
6. 사무처장 1인

제 11 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① 임원은 법률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정회원으로 사업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협회장을 겸한 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최초의 경우는 발기인 대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할 수 있다.
2.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 지회장을 포함하며, 그 외 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처장 1인, 직능별 대표, 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
3. 부회장은 총회 선출 3인, 이사회 선출 2인으로 한다.
4. 지회장은 각 지회별 회원이 선출한다.
5.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6. 대표와 감사는 회원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으로 한다.
단 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승인될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② 대표 유고시 직무대행은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정회원 중에서 협회 대표가 임명한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회계년도 결산 총회 시까지)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만료 또는 사임에 의해 임원의 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임하는 임원은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사하고, 사임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임원의 직무)

- ① 본 협회의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사무처장을 지휘, 감독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으로 대외 의전 업무와 분과위원회, 지회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회원의견을 수렴하여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지회장은 각 지역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등에서 결의한 사항을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요구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사무처장은 대표의 명을 받아 협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 14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협회의 재산상황 감사
- ②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③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상황을 보고한다.
- ④ 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임원의 회비)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처장, 지회장등 임원은 매년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6 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본 협회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제 17 조(고문, 자문위원)

- ① 본 협회와 뜻을 같이 하는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 정치인, 전임회장을 지낸 사람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본 협회의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3 절 분회, 분과위원회, 사무처 등

제 18 조(지회의 설치)

- 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각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시는 대전광역시에 포함한다.
- ② 지회는 전항의 행정구역에 주소지를 둔 협회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협회 정관과 운영규정을 준수 한다
- ③ 지회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9 조(분과위원회)

- ① 본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개발분과, 교육연수 분과, 홍보섭외분과, 미래비전분과, 특임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0 조(사무처 및 직원)

- ①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 21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2 조(총회의 종류와 개최)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총회는 대표가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에서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23 조 (총회 소집 통지)

- ① 대표는 총회 개최일 14일 전에 회의의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홈 페이지 공지 또는 우편, fax, 밴드, 전자메일, 문자 통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 22 조 제 2 항 각 호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이 회원 4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4 조(총회의 정족수)

- ① 총회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단, 제 25 조 제 2 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제 3호의 법인의 해산 및 합병은 총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본 협회의 회원은 출석한 회원을 통하여 서면에 의한 위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권의 행사는 수임 받은 회원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 25 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단, 최초의 경우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 및 청산, 합병에 관한 사항
4. 입회비와 연회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26조(총회의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제척된다. 단, 출석 회원 수에는 산입 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협회와 이해 상반되는 사항

제 27 조(회의록)

1.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 사무처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한 회원 수 및 성명 등 인적사항, 의사의 경과와 개요, 결과를 기재하고 회의록 초안에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사무처장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록을 정서하여 초안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상기 1, 2, 3호는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8 조(이사회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임원과 대표가 지명하는 산림, 의료, 보건 간호 등 직능별 이사로 구성하다.
- ② 이사의 총수는 제10조 제4호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동조 제3호의 감사의 수는 제외한다.
- ③ 이사회회의 의장은 협회 회장으로 하되, 유고시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 29 조(이사회회의 소집)

- ① 협회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인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회의 소집은 개최 3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이사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회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내 이사회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제 30 조(이사회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8. 지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9.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회 운영 및 회무 집행에 관하여 대표가 부의한 사항

제 4 장 자산 및 회계

제 31 조(재산의 구분)

- ① 협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제 32 조(자산의 관리)

- ①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처분, 또는 대체코자할 때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협회에서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기록 하여야 한다.

제 33 조(재정)

- ① 수입은 입회비와 회비, 기부금 및 후원금품, 산림치유 활동비, 교육비, 연구 조사활동, 간행물 발행 등에서 부수되는 수입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본 협회가 운영하는 사업, 직원의 보수,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다.

③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특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34 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 35 조(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의 편성) 본 협회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36 조(결산) 본 협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5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 37 조(정관변경)

①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25조 제2호의 정관변경 의결정족수는 최근 2년간 회비 미납이 없는 회원의 총수를 제24조 제1항 단서의 총회원수로 한다.

제 38 조(해산)

① 본 협회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효율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 단체와 해산 후 합병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총회원의 4분의 3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본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

임하여 재무를 완제하고 잔여 재산은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39 조(준용규정)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용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다.

제 40 조(운영규정)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41 조(정관 또는 운영규정의 시행) 정관 또는 운영규정이 시행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제정 또는 개정일로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2016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지회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의 양성기관 부회장은 지회 설립 시 또는 본인 임기 만기까지만 그 직을 유지한다.
3. 2017년 2월 27일, 1차 정기총회에서 위임 받은 이사회에서 1차 개정
4. 2018년 3월 17일, 2차 정기총회에서 위임 받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차 개정